입지규제최소구역

입지규제최소구역은 광역도시계획,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및 관리 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？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이다.

용어설명

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 · 지구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을 특정 공간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허용함으로써 개성 있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. 입지규제최소구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, 구역 지정 및 구역계획은 법 제40조의2제7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？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없다.

관련법규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동법시행령

관련용어

용도구역 도시계획사업

참고

-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
From:
https://www.conschool.co.kr/ - **DB World**

Permanent link:
https://www.conschool.co.kr/%EA%B1%B4%EC%84%A4%EC%9A%A9%EC%96%B4/%EC%9E%85%EC%A7%80%EA%B7%9C%EC%A0%9C%EC%B5%9C%EC%86%8C%EA%B5%AC%EC%97%AD

Last update: **2016/04/07 03:59**